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검 토 보 고

〈 탄소중립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등 〉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25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7
1. 제정안의 개관	7
2.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배경	12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총괄 검토	15
4. 조문별 검토	25
가. 목적 및 정의	25
나.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
다.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확인 등	33
라. 재정·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40
마. 전(全)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 측정 지원	48
바. 제품등 우선구매 및 구매자·이용자 지원	51
사. 허가등 신속처리,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등	57

아. 탄소차액계약의 체결 등	70
자. 탄소중립산업 실태조사·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 보호	79
차. 탄소중립기술 사업화 지원 및 규제 개선	84
카.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협업체 구축 등	90
타. 재원 조성 및 추진상황 점검 등	96
파. 보칙 및 부칙	103

※ 참고자료 108

1. 미국 IRA에 규정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내용	108
2. 전과정평가(LCA) 개요	109
3. 녹색제품 개요	112
4. 환경성적표지 개요	113
5. 저탄소제품인증 개요 및 현황	114
6.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 자료	115
7.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지원 개요	116

I. 제안경위

2026년 3월 25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6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 설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변화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25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육성이나 기업들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 사례가 부족한 실정임.

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의 ‘GX 추진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정·금융·세제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투입·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달라진 국제적 경제 질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기술’, ‘탄소중립산업’, ‘탈탄소 전환’, ‘온실가스 배출기업’

등을 관련 법률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에 따른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

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기반하여 국가, 산업, 기업 단위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 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매출액, 연구개발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전문기업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이자 차액 보전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가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운용할 수 있게 하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하게 함(안 제7조).
- 마. 전문기업의 생산·투자 등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업의 신청을 받아 탄소중립제품 전(全)과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측정·보고·검증을 지원함(안 제9조).
- 사. 국가·지자체 등이 탄소중립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이용자에 대해 보조금 등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전문기업이 사업 활동과 관련된 허가 등의 신속 처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신속 처리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12조).
- 자. 중점산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표준화·인증,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화, R&D 사업 및 탄소중립산업 특화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등을 우선 시행·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 차.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중점산업 분야 R&D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처리 및 면제 허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온실가스 배출기업 탈탄소 전환에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이자 차액 보전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가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운용할 수 있게 하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하게 함(안 제16조).

타.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투자·감축량 등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저탄소 제품 전(全)과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측정·보고·검증을 지원함(안 제18조).

하. 국가·지자체 등이 저탄소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이용자에 대해 보조금 등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거.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탈탄소 전환 사업 활동과 관련된 허가 등의 신속 처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신속 처리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21조).

너. 관련 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등의 표준화·인증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탄소중립산업으로의 사업 재편 등을 우선 처리하도록 함(안 제22조).

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의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5년 이내의 기간을 범위로 탄소차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그 정보를 관리·제공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머. 탄소중립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제품 수입·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관세 등 제도개선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버. 탄소중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구개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서. 탄소중립전문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규제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어.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전문기업,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5조).

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기금·특별회계, 국채, 벤처투자모태조합, 그 밖의 투자전문조합·회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커.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는 국가기후위기대응 위원회의 위원장이 매년 점검하여 결과를 공개토록 함(안 제39조).

터. 탄소중립산업 등에 대한 단기간 집중 지원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 2년 전까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비전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 산업·탄소중립기술·탈탄소 전환·온실가스 배출기업 등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탄소중립전문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체계와 ②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를 같은 구조(재정·금융·세제지원 → LCA¹⁾ 지원 → 구매 지원 → 신속처리·우선적용 특례)로 병렬적으로 갖추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아울러 탄소차액계약, 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 전문인력 양성, 자금·모태조합 등을 통한 재원 조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함께 규정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한시적·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의 제정안은 총 6장 43개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1)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 측정 지원

제2장은 탄소중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은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2장과 병렬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제4장은 탄소중립산업등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자원 조성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장 보칙에서는 자료 제출·검사, 권한의 위임·위탁, 적극행정 면책 특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며 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제정안의 조문 구성]

장	조항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5조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확인
	제6조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확인의 취소
	제7조	탄소중립전문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등 지원
	제8조	탄소중립전문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9조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 측정 지원
	제10조	탄소중립제품등 우선 구매
	제11조	탄소중립제품등 구매자·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3조	다른 법률의 우선적용에 대한 특례
	제14조	사업추진심사에 관한 특례
	제1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장	조항	조 제목
제3장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특례	제16조	탈탄소 전환에 대한 재정·금융 등 지원
	제17조	탈탄소 전환에 대한 조세 감면
	제18조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 측정 지원
	제19조	저탄소제품 우선 구매
	제20조	저탄소제품 구매자·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2조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에 대한 특례
	제23조	탄소차액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제24조	탄소차액계약의 변경 및 해지·해제 등
제4장 탄소중립산업등의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25조	실태조사
	제26조	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제27조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제28조	탄소중립산업의 보호 등
	제29조	탄소중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30조	규제개선 신청 등
	제31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2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3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등
	제34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지원 등
	제35조	협업체
제5장 재원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제36조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37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
	제38조	투자전문조합등을 활용한 지원
	제39조	추진상황의 점검 등
제6장 보칙	제40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1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제42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유효기간
	제3조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제 정 안 요약표]

구분	제1장 총칙	
목적	○ (1조) '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	
정의	○ (2조) '탄소중립기술'과 '탄소중립산업'을 폭넓게 정의 - 탄소중립기술 : 기후기술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기술(감축·적응·CCUS 포괄), 순환경제법에 따른 순환경제기술, 기타 大令으로 정하는 기술 - 탄소중립산업 : 탄소중립기술 활용 제품·서비스 생산·제공 산업 +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으로 폭넓게 정의	
타법과 관계	○ (4조) 탄소중립산업, 탈탄소 전환에 우선 적용, 기업에 유리한 경우 타법 적용 가능	
-	제2장 탄소중립산업 육성	제3장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
대상	○ (5·6조) 大令으로 정하는 중점산업 중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지원 대상 확정)	○ (2조) ETS 할당업체, 목표관리업체, 大令으로 정하는 업체 대상
재정 지원	○ (7조) 탄소중립제품 생산설비 설치·운영, 원료·소재·부품 등 구매, R&D·사업화 등에 보조금 등 지급	○ (16조) 감축설비 및 저탄소제품 생산설비 설치·운영, 원료·소재·부품 등 구매, R&D·사업화 등에 보조금 등 지급
금융 지원	○ (7조) 탄소중립제품 생산 등 관련 사업활동에 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개발 허용 및 정부 이차보전 등 지원	○ (16조) 감축 및 저탄소제품 생산 등 관련 사업활동에 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개발 허용 및 정부 이차보전 등 지원
보증 우대	○ (7조) 신보·기보 보증 우대	○ (16조) 신보·기보 보증 우대
세액공제 (조특법 등)	○ (8조) 생산세액공제 (생산량·생산비용 기준) + 투자세액공제	○ (17조) 감축량 기반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LCA 지원	○ (9조) 탄소중립제품 대상	○ (18조) 저탄소제품 대상
공공 조달	○ (10조) 정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탄소중립제품 우선 구매	○ (19조) 정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저탄소제품 우선 구매
구매·이용자 지원	○ (11조) 탄소중립제품 구매·이용자 보조금·지원금 지급, 세액 감면(조특법 등), 보호 및 편익증진 정책 추진	○ (20조) 저탄소제품 구매·이용자 보조금·지원금 지급, 세액 감면(조특법 등), 보호 및 편익증진 정책 추진

허가 등 신속처리	○ (12조)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탄소중립제품 생산 등 사업활동에 관한 허가 등 신속처리 특례 부여	○ (21조) 대상기업의 감축 및 저탄소제품 생산 등 사업활동에 관한 허가 등 신속처리 특례 부여
표준화·인증 우선처리	○ (13조) 국가표준법,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인증 등 우선 적용·처리	○ (22조) 국가표준법,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인증 등 우선 적용·처리
기타 특례	○ (13조) 소재부품장비법 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 우선 적용·처리	○ (22조) 산업융합법, 기업활력법 에 따른 사업 융합·재편 우선 처리
	○ (13조) 탄소중립전문기업 소재 지역 등을 녹색융합클러스터 로 우선 지정하고, 재생수소 공급 등 우선 지원 ○ (13조) 기후기술법, 환경기술산업법, 산업기술혁신법 등 R&D 시 탄소중립기술 개발 사업 우선 추진 ○ (14~15조) 중점산업 분야 R&D 사업추진심사 우선시행·면제	○ (22조) 탄소중립기본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 우선 처리 ○ (23·24조) 할당대상업체 大畧으로 정하는 업체 대상 CCfD 시행
-	제4장 탄소중립산업 등의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 (25조) 탄소중립산업기술 및 국내외 시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26·27조) 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	
산업 보호 및 사업화 지원	○ (28조) 원산지규정 강화, 부적합 제품 수입유통 금지, 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개선 등 추진 ○ (29조) 탄소중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R&D,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업 추진	
규제개선	○ (30·31조) 기후대응위 심의 등으로 개선 조치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 (32~34조) 대학·산학협력 등 인력양성 해외인력 유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실시	
협의체	○ (35조) 애로사항 논의·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 참여 협의체 구성·운영	
-	제5장 재원 및 추진상황 점검	
재원	○ (36~38조) 기후대응기금, 환특·에특, 전력기금 등 활용 및 국채 발행 근거 마련 , 벤처투자모태펀드(중기부) 및 투자전문조합·회사(기존·신규) 등 활용	
이행점검	○ (39조) 기후대응위가 매년 이행점검(※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과 연계)	
-	부칙	
유효기간	○ (부칙 2·3조) '40년까지, 연장 필요 시 정부가 국회에 '38년까지 보고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배경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투입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²⁾」을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³⁾를 확대하였고([참고 1] 참조), EU는 「탄소중립산업법(NZIA⁴⁾)」을 통해 탄소중립기술의 역내 생산 목표 설정과 투자촉진·규제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법」을 통해 GX경제전환채⁵⁾ 발행·성장지향형 카본프라이싱⁶⁾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GX리그)를 운영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법률 사례]

국가	법률	내용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에너지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보조금 중심의 투자 유인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탄소중립기술의 역내 생산 목표 설정 및 투자자 촉진·규제 간소화 방안 마련 - 인허가 단축 및 제조역량 내재화
일본	GX 추진법	GX경제전환채 발행, 성장지향형 카본프라이싱 도입 - 시장 매커니즘 융합형 로드맵

2) Inflation Reduction Act : 2022. 8. 16.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발효되었고, 조문별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순차적으로 발표함.

3)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4) Net-Zero Industry Act

5) 정부 인증 탈탄소 전환 국채

6) 카본프라이싱(Carbon Pricing) : 탄소가격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겨,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한 양만큼 돈을 내게 만드는 제도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별도의 특별법 체계로 다루면서, 통상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집중적·한시적 정책수단을 투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장에서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포괄적 근거(제54조부터 제62조까지)를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기술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산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산업의 탈탄소·저탄소 전환을 지원해 왔음.

다만, 탄소중립 목표 시한인 2050년까지 25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개별법·기본법 체계만으로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 산업의 육성이나 기업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이에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① 탄소중립산업 중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탄소중립

전문기업'으로 확인하여 재정·금융·조세 지원, 우선구매, 신속처리 특례 등을 부여하는 체계(제2장)와 ②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체계(제3장)를 병렬적으로 갖추고, 여기에 탄소차액계약(제23조·제24조)과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육성과 기업 전환을 하나의 특별조치법으로 통합하여 단기간(2040년까지 한시 운영)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국 IRA, EU NZIA, 일본 GX 추진법 등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을 지원하는 종합적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임.

특히 중점산업을 정하여 전문기업을 확인하고 법적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제5조·제6조), 재정·금융·보증 지원의 근거(제7조·제16조), 허가등 신속처리 특례(제12조·제21조) 등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 그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수의 국내 입법례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 관련 해외 입법례와 견주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총괄 검토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개별법에서 각 산업 분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탄소중립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성, 특히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이 이미 시행 중임에도 ‘탄소중립산업’을 총괄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조제11호는 탄소중립산업을 ① 탄소중립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달성·이행에 기여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 ② 그 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중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산업”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이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탄소중립기본법」, 「친환경산업법」 등 개별법이 각각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전기 및 설비, 무탄소수소 및 설비, 에너지절약사업, 녹색제품, 재생자원 등 특정 대상을 산업별로 규율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제정안에서는 이를 열거하는 대신 “중점산업” 지정이라는 위임 형식을 통해 탄소중립산업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판단됨.

탄소중립산업 관련 개별법은 기본계획, 특화단지 지정, 인력양성 지원, 세제 지원 등에 관하여 각 법률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고,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신속 지원 수단은 어느 개별법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탄소중립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탄소중립산업 관련 소관 법령별 지원내용]

구분	전기차	재생에너지 및 설비	무탄소수소 및 설비	에너지 절약사업	녹색제품	재생자원
소관법령	친환경 자동차법	신재생 에너지법	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탄소중립 기본법	친환경 산업법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관	O	O	O	O	O	X
	국무회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심의회	수소경제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국가기후 위기대응 위원회, 국무회의	
위원회 유무	X	X	O	X	O	X
			수소경제 위원회		국가기후 위기대응 위원회	
특화단지 지정	X	△	O	X	O	O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조성 및 보급	수소특화 단지		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생태산업 단지
기술개발 사업 추진	O	O	O	O	O	O
	기술개발 위한 지원 시책 수립·추진	기술개발 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수소전문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본계획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내용 포함	기후위기의 감시·예측과 관련 기술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구분	전기차	재생에너지 및 설비	무탄소수소 및 설비	에너지 절약사업	녹색제품	재생자원
소관법령	친환경 자동차법	신재생 에너지법	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탄소중립 기본법	친환경 산업법
인력양성	△	○	○	○	△	△
	기술기반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양성 사업 추진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인력양성 시책을 마련	청정건설 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훈련
예타 특례	X	X	X	X	X	X
재정지원	○	X	X	X	○	○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기후대응 기금	설비자금 등 지원
세제지원 특례	X	△	X	△	X	X
		(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즉, 제정안과 같이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산업 분야(중점산업)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하나의 법률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인허가 신속처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함께 규정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중점산업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가 부상하더라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법을 매년 제정하거나 법률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방식보다 입법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은 산업 육성(제2장)에 더하여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제3장)까지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유사 제정안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91)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차이가 있음.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존 법체계(「탄소중립기본법」 및 개별 산업법)와의 중복이나 적용상 혼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탄소중립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체계·정보센터는 「환경기술산업법」 제9조의2⁷⁾, 「기후기술법」 제7조⁸⁾, 「친환경산업법」 제3조의2⁹⁾·제17조¹⁰⁾ 등 기존 개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8)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성별·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략)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생략)

별법에 따른 실태조사·정보망 운영 제도와 조사 대상·방식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사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¹¹⁾

[탄소중립산업 관련 정보관리체계 법률]

	제정안	환경기술산업법	기후기술법	친환경산업법
조문	제25조~제27조	제9조의2	제7조	제3조의2·제17조
내용	- 탄소중립산업정보 실태조사 - 탄소중립기술자 연구·개발·보유자, 탄소중립산업과 그 산업의 사업자, 탄소중립제품등의 국내외 시장 현황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 조사 또는 통계 작성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 성별 분야별 기능별 인력현황 및 수요 전망 - 분야별 기능별 기술 개발 및 투자 규모 - 기술개발 성과 조예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등 실태조사
	탄소중립산업정보 관리체계 구축 운영	-	-	- 청정생산사업장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운영
	탄소중립산업정보 센터 지정·운영	-	-	-

자료 : 직접 작성

11)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조사 대상은 제정안에서 정의하는 ‘탄소중립산업’의 범위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조사 및 정보관리체계를 둘 실익이 있고, 조사 대상 기업의 이중적 자료제출 부담 및 부처 간 행정 비효율의 문제는 제정안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탕으로 부처 간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임.

나아가 제정안에서 정의하는 탄소중립산업(제2조제11호)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¹²⁾의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미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지원 시책 마련(제54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제56조), 조세 감면 지원(제59조), 집적지·단지 조성(제61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전문기업 지원체계(제2장)와 기본법상 녹색산업 지원체계 간 중복 규정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탄소중립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¹³⁾

또한, 현재 동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제정안·전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동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발의 법률안 현황]

법률안명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내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83호,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부)	민·관 협력의 기초하에 성장지향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기업의 그린전환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기업 지원책 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안)」 ¹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탄소중립선도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3)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전체를 포괄하여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기반으로 녹색경제·녹색산업 등 전반에 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지만, 제정안의 경우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기본계획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달성 등을 위해 녹색산업의 일부인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한시적·집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이기에 때문에 기본법-특별법 관계에서 지원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었다는 의견임.

산업통상부 또한 제정안 전반에 대해 기존 법률(「탄소중립기본법」, 「환경기술산업법」, 「기후기술법」, 「친환경산업법」 등)로 충분히 규율 가능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지원대상(중점산업 및 탄소중립전문기업) 선정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 중 일부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구조인데, 중점산업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¹⁵⁾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연료전지, 수소차 등 친환경/탄소중립 기술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과 논란이 있는 산업의 경우 중점산업 지정 여부에 따라 업계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음.

따라서, 원만한 제도 운용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산업의 핵심 요건과 지정 기준(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술 파급성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세부사항만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4)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854호,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2206170호,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2209341호,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054호,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15) 제5조(탄소중립전문기업의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하 “중점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이 … (이하 생략)

셋째, 제정안을 통해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¹⁶⁾와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문제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 제23조·제24조에 따른 탄소차액계약은 「국가재정법」 제2317)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15년까지 허용하고 기후대응기금 등을 장기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기간 고정계약의 경우 정책환경 변화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재정 건전성 측면의 우려가 있으므로, 탄소중립과 관련한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하여 재정 당국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 여부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⁸⁾

재정경제부는 탄소차액계약 제도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16) 제23조(탄소차액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조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가격(이하 “배출권 거래가격”이라 한다)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납부받는 계약(이하 “탄소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탄소차액계약의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계약별로 1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이하 생략)

17)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하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8)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정안 제24조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가격 급락 등 상황 발생 시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제정안이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의견임.

넷째, 해양수산부·산림청은 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소관 부처 혹은 수행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닌 ‘정부’로 규정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예컨대, 안 제5조(탄소중립전문기업의 확인), 안 제29조(탄소중립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조항의 경우 그 주체를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부로 변경하여 다양한 탄소중립분야에서 소관별로 전문성을 가진 각 부처가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폭넓은 기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안 제29조의 탄소중립기술 사업화 지원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는 것은 검토 가능할 것이나, 이미 제정안이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 대부분의 내용을 관계 부처의 역할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5조의 탄소중립 전문기업 확인처럼 제도의 통일적·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까지 여러 부처로 분산하게 되면 기업의 혼란, 형평성 저해, 중복지원 또는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제정안 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이상을 종합하면, 탄소중립 목표 시한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신속처리 특례 등을 통합적으로 갖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임.

다만, ① 탄소중립기본법 등 기존 법체계 및 계류 중인 유사 법안과의 관계,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검토, ③ 새로운 제도인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관련 재정 건전성·제도 기반 마련 여부,

④ 제정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제도의 수행 주체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각 부처의 역할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제정안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제1항의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으로 규정하고, 제2조는 탄소중립·탄소중립산업·탈탄소 전환·온실가스 배출기업 등의 용어를 「탄소중립기본법」·「기후기술법」·「순환경제사회법」·「배출권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념에 기반하여 정의함.

[제정안 제1조·제2조]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1항의 국가비전 달성에 필수적인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탄소중립을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란 기본법 제2조제4호의 탄소중립 사회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의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본법 제2조제7호의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
6. “온실가스 흡수”란 기본법 제2조제8호의 온실가스 흡수를 말한다.
7. “기후정의”란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정의를 말한다.
8.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본법 제2조제13호의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제 정 안

9. “탈탄소 전환”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 활동 등의 구조를 화석에너지의 사용 축소·대체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그 배출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10. “탄소중립기술”이란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의 순환경제기술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11. “탄소중립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중립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
나. 가목에 따른 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하거나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12. “온실가스 배출기업”이란 사업 활동에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포함한다)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육성·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전환을 목적으로 규정하며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① 기존 법률을 인용(제1호~제8호)하거나 ② 새롭게 정의(제9호~제12호)하고 있음.

기존 법률을 인용하는 용어 규정은 탄소중립, 온실가스, 기후정의

등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새로 제정되는 법률이 기존의 국가 기후변화 대응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동일한 개념에 대해 법률간 상이한 정의로 발생할 수 있는 법체계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탈탄소 전환’, ‘탄소중립기술’, ‘탄소중립산업’, ‘온실가스 배출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이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이라는 포괄적 개념만 두고 있어, 가치사슬 전반(소재·부품·장비 및 서비스)을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정의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용어 정의]

호	용어	기본법 제2조 인용조항	정의
1	탄소중립	제3호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	제4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에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온실가스	제5호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 ₂), 메탄(CH ₄), 아산화질소(N ₂ 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 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	제6호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

호	용어	기본법 제2조 인용 조항	정의
			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	제7호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흡수	제8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정의	제12호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정의로운 전환	제13호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9	탈탄소 전환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 활동 등의 구조를 화석에너지의 사용 축소·대체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그 배출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
10	탄소중립기술	-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의 순환경제기술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11	탄소중립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중립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 나. 가목에 따른 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하거나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12	온실가스배출기업	-	사업 활동에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

호	용어	기본법 제2조 인용 조항	정의
			권 할당 대상업체(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포함한다)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다만, 산업통상부는 기존 법률(「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환경기술산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후기술법」, 「친환경산업법」 등)로도 상당 부분 규율이 가능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안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문의 삭제 의견을 제출한 바, 제정안과 같이 신산업 육성 체계를 기후 분야 소관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¹⁹⁾

19) 이에 기후부는 제정안이 한시법(부칙 제2조, 2040년까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 체계를 항구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 집중지원 수단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제4조)

제정안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① 국가 성장동력 및 경쟁력 강화, ②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배출 최소화, ③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 및 기후정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제4조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규정하되, 기업에 더 유리한 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함.

[제정안 제3조·제4조]

제정안
제3조(기본원칙) 이 법에 따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성장동력 확충과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2. 국내 산업이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 화석연료의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지 않게 하거나 그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 기업이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 탄소중립산업과 탈탄소 전환에 대한 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활동 및 계획에 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기후정의 구현과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특례·규제 개선에 대해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 기본법 및 개별 산업법(「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일반적 지원 체계를 넘어, 2040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특별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또한,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하여 동법의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간 충돌 시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와 같이 기업 지원 및 규제 특례를 다루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²⁰⁾ (이하 “지역특구법”)에서도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피규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시하는 유사입법례가 존재함.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 경우”라는 예외 규정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여 집행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예컨대, 기후부의 본 제정안과 산업부의 개별법이 제공하는 지원

2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등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목·지원 제도가 상이한 경우 수혜기업에 더 유리한 법률 적용 해석을 위한 집행 지연이나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철강업종의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대하여 유사한 재정·금융·조세 지원 및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 규정²¹⁾을 두고 있어, 철강업종 배출기업에 대해서는 본 제정안과 「철강산업법」이 모두 ‘특별법’으로서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통상부 또한 본 제정안이 산업통상부의 개별법률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제출한바, 타 부처 소관 법령과의 혼선 및 부처 간 권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협의 절차를 활용하거나 하위법령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다.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확인 등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매출액·연구개발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전문기업을 확인(제5조)하고, 거짓 확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확인을 취소(제6조)하도록 함.

[제정안 제5조·제6조]

제정안
제2장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5조(탄소중립전문기업의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하 “중점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탄소중립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중점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총매출액 대비 중점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탄소중립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6조(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의 탄소중립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는 법령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탄소중립전문기업’으로 선별·확인하여 지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탄소중립 신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현행 「환경기술산업법」²²⁾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오염 물질 저감, 자원·에너지 절약 등 기업의 ‘경영 관리 체계 및 공정 양호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본 제정안의 ‘탄소중립전문기업’은 중점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의 매출 및 R&D 투자액 등 ‘산업 성장 역량’을 기준으로 산업 육성 촉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 및 탄소중립전문기업 비교]

구분	녹색기업	탄소중립전문기업
근거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2	동 제정안 제5조
대상	○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사업장	○ 탄소중립산업 중 大畧으로 정하는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총매출액 중 중점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大畧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 총매출액 대비 중점산업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大畧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 기타 大畧으로 정하는 요건
비고	기업의 오염물질·자원·에너지, 제품 환경성, 녹색경영체제 등을 종합 고려	기업이 영위하는 탄소중립산업 관련 사업 비중 등 기준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조항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문기업 확인의 기준인 ‘중점산업의 범위’, ‘매출액 비중’,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등을 모두 구체적인 범위 제시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중점산업과 관련된 매출인지 여부를 심사·판정하는 주체나 최소한의

법률적 기준이 있어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중점산업 선정에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심사 기구를 법률에 기재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핵심전략기술(제12조²³⁾)과 공급망안정품목(제12조의2²⁴⁾)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접수·평가 등 선정 절차를 전담하는 심의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유사입법례를 따라 ‘중점산업’의 기준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기업의 장기적 투자 결정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⑤ (생략)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아울러, 관계부처의 의사결정 참여를 법률에 규정하여 향후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절차의 행정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 절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문의 확인 기준에 따라 기업 간 경쟁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과도하거나 특정 기업에만 유리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안)」²⁵⁾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였음.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기술 역량이 필요한 대상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전문기업'과 중기부의 '녹색경영 중소기업' 간 지원 창구 다변화로 인한 기업의 행정 부담과 예산 중복 투입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두 법률 간 지원 대상의 명확한 차별화 및 부처 간 전담 영역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854호,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2206170호,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2209341호,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054호,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안)」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지원대상·내용]

지원 대상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탄소 감축 수준 및 감축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 내용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수출 및 판로 개척지원 3. 자금조달, 인력수급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4. 기술개발 5. 공공조달 우선구매 4. 교육공무원의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 5. 투자 6. 부담금의 면제 7. 규제의 신속처리 등

해당 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단계로,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조문 중복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전문기업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 취소’만을 규정하여, ① 별도의 형사처벌(벌칙)이나 과태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전문기업 확인 취소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탄소중립전문기업은 본 제정안에 따라 국가의 재정·금융 지원과 특례를 받게 되므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 벌칙이나 부당이득 환수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지정 취소’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를 규정하

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청문절차를 규정한 유사입법례로써 「환경기술산업법」 제30조²⁶⁾는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하게 동 제정안에도 지정 취소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청문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임.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청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라. 재정·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안 제7조·제8조, 제16조·제17조)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전문기업(제7조)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제16조)에 보조금·이자차액 보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조건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투자액·감축량 등을 기준으로 국세·지방세를 감면(제8조·제17조)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7조·제8조, 제16조·제17조]

제정안
제7조(탄소중립전문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 자금 융자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점산업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서비스(이하 “탄소중립제품등”이라 한다) 생산·제공에 필수적인 장비·설비 등의 설치·운영 2. 탄소중립제품등 생산·제공에 필수적인 원료·소재·부품 등의 구매 또는 기술의 개발·사업화 3. 그 밖에 탄소중립제품등 생산·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활동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탄소중립제품등 생산·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관한 금융상품을 개발·운용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전문기업이 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자(利資) 차액 보전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탄소중립제품등 생산·제공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료, 보증한도 등 보증조건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정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운용, 보증조건 우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8조(탄소중립전문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점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전문기업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제품등 생산·제공에 필수적인 장비·설비 등의 설치에 투자한 금액, 탄소중립제품등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 등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한다.

제3장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특례

제16조(탈탄소 전환에 대한 재정·금융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 자금 융자 지급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흡수 등 배출 저감(이하 “감축등”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장비·설비 등의 설치·운영 및 기술 개발·사업화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제품(이하 “저탄소제품”이라 한다) 생산·제공에 필수적인 공정·설비의 도입·개선·교체 및 운영
3. 저탄소제품 생산·제공에 필수적인 원료·소재·부품 등의 구매 또는 기술의 개발·사업화
4. 그 밖에 감축등이나 저탄소제품 생산·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활동

② 금융회사등은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감축등이나 저탄소제품 생산·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관한 금융상품을 개발·운용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자 차액보전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감축등이나 저탄소제품 생산·제공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료, 보증한도 등 보증조건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정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운용, 보증조건 우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탈탄소 전환에 대한 조세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제 정 안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축등에 필수적인 장비·설비 등의 설치나 저탄소제품 생산·제공에 필수적인 공정·설비의 도입·개선·교체에 투자한 금액,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등의 배출 저감량 등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한다.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대규모 탈탄소 설비투자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① 재정 지원, ② 금융 지원, ③ 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전문기업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대하여 탄소전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재정 지원 측면에서 제정안 제7조 및 제16조는 보조금 지급, 자금융자, 이자차액보전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 회수 기간이 긴 탄소전환 설비투자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탈탄소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음으로, ② 금융 지원 측면에서 제정안 제7조 및 제16조는 공공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보증한도 및 보증조건 우대 의무를 규정하여, 탈탄소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및 보증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지막으로, ③ 조세 감면의 측면에서 제정안 제8조 및 제17조는 탄소중립전문기업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제품·저탄소제품등 생산·제공에 필수적인 장비·설비 등 설치에 투자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이와 같은 조세 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채택하고 있는 생산세액공제(PTC) 및 투자세액공제(ITC) 체계와 유사한 맥락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 장벽에 대응하여 국내 제조업 기반 기업들의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지원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보증조건 우대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분은 「기술보증기금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기금의 설립목적(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²⁷⁾)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²⁸⁾이라는 점을 고

27)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8)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려할 때, 의무 규정보다는 재량 규정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우선적 지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상충하므로 재량 규정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조건 우대 규정을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기금 우대 지원 유사입법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 지원) ②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각각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그 업무는 본 사업과 수탁사업으로 구분됨에도 동 제정안은 본 사업과 수탁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사업 수행을 명시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본 사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에서 명시한 업무로써 금융위원회에서 업무 계획을 승인하고 감독하지만, 수탁사업의 사례인 ‘녹색공정전환보증’(「탄소중립기본법」) 및 ‘무탄소에너지보증’(「재생에너지법」) 등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체계이므로,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 기관 전체에게 보증 조건 우대 의무를 부여할 경우 사업별로 승인·감독 주체가 달리 규정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의견은 일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이미 「탄소중립기본

법」 제59조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보증조건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는바, 제정안 조항이 「신용보증기금법」과 반드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보증조건 우대를 규정하는 유사입법례]

「탄소중립기본법」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은 예산과 달리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고, ② 비과세·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므로, 제정안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동 제정안과 유사하게 개별 법률에서 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써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조세 감면 규정 유사입법례]

「탄소중립기본법」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 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마. 전(全)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 측정 지원(안 제9조·제18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전문기업(제9조)·온실가스 배출기업(제18조)의 신청을 받아 탄소중립제품·저탄소제품의 전과정 평가(LCA²⁹⁾)를 지원하도록 함.

[제정안 제9조·제18조]

제정안
제9조(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 측정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전문기업의 신청을 받아 탄소중립제품등 전(全)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흡수량 등의 측정·보고·검증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 측정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저탄소제품 전(全)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흡수량 등의 측정·보고·검증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방법임.

평가는 국제표준(ISO 14040/14044)에 따라 통상 ① 목적 및 범위 설정(제품군 정의, 기능단위·시스템 경계 설정) → ② 목록 분석(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투입물·산출물 데이터 수집) →

29) LCA(Life Cycle Assessment) :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투입물, 산출물, 잠재적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법

③ 영향평가(수집된 목록자료를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영향범주로 환산) → ④ 결과 해석의 4가지 단계로 수행됨([참고 2] 참조).

[LCA 구조]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배터리 규정 및 글로벌 대기업들의 상위 공급망 관리 강화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에 전과정평가 결과 제출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독자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인된 LCA 데이터베이스 및 측정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이러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측정·보고·검증을 직접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고 공인된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본 조항에 따른 국가 지원이 실질적으로 수출 장벽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EU의 CBAM 배출량 산정 방식이나 ISO 국제표준 등 국제적 기준과 측정 방법론이 정합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측정·보고·검증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주체가 모호하므로 하위법령 위임 규정 추가 등 보완이 필요함.

현행 조문만으로는 국가가 전과정평가(LCA)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인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측정·검증 절차 자체를 대행해주는 것인지 지원 형태가 불분명한 점이 있고,

실제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위탁받을 전문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운영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위법령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내용과 수행 주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바. 제품등 우선구매 및 구매자·이용자 지원(안 제10조·제11조, 제19조·제20조)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탄소중립제품등(제10조) 및 저탄소제품(제19조)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이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제11조·제20조)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0조·제11조, 제19조·제20조]

제정안
제10조(탄소중립제품등 우선 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탄소중립제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탄소중립제품등 구매자·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제품등 구매자·이용자에 대하여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의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이용자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제품등 구매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저탄소제품 우선 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탄소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저탄소제품 구매자·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제품 구매자·이용자에 대하여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의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이용자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저탄소제품 구매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제품 및 저탄소제품과 같은 신산업 초기 단계 품목들은 높은 R&D 비용과 초기 설비 투자로 인해 일반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민간 수요만으로는 자생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움.

이에 제정안은 공공조달력을 활용하여 초기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규모 경제 확보를 유도하려는 취지임.

다만, 동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녹색제품구매촉진법」 상 녹색제품 우선구매 규정과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구분	근거 법률	우선구매 대상 및 성격
사회적 약자 보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여성기업지원법, 장애인고용법	중소기업제품(의무), 여성·장애인 기업 제품(목표제)
친환경·신기술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녹색제품(의무) ³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제품
본 제정안(추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	탄소중립제품 및 저탄소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30)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탄소중립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서, 다음 3가지 제품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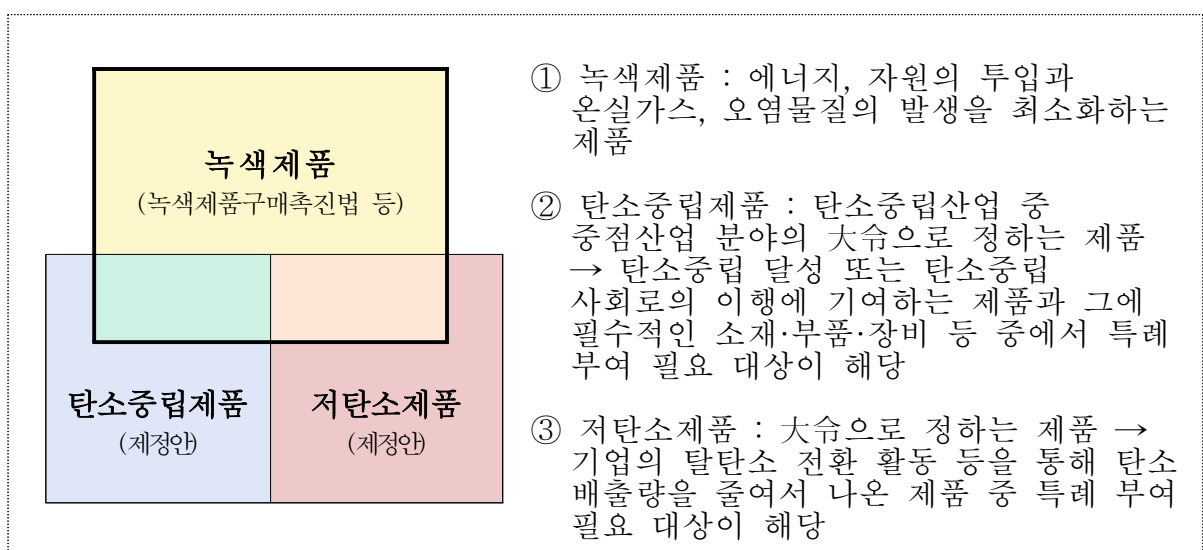
- ① 환경표지제품 : 같은 용도의 타 제품 대비 탄소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오염물질 감소 등 종합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② 저탄소제품 : 같은 용도의 타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을 줄인 제품으로서 타법에 따른 관리 대상인 의약품, 농축수산물, 임산물을 제외한 제품
- ③ 우수재활용(GR)제품 : 폐자원을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

현행 「녹색제품구매촉진법」은 동 제정안과 유사하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 구매자·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제정안의 ‘탄소중립제품(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저탄소제품(안 제16조제1항제2호)’의 우선 구매 및 구매자·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다만, 기후부에 따르면 ‘녹색제품’은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오염물질 배출 감소,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등 환경 전반의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탄소중립제품’ 및 ‘저탄소제품’은 환경 전반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배출 저감’에 보다 중점을 둔 제품임([참고 3] 참조).

참고로, 제정안에 따른 ‘탄소중립제품’과 ‘저탄소제품’은 「탄소중립기본법」 및 「녹색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녹색제품’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녹색제품 및 탄소중립제품·저탄소제품 구분]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녹색제품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탄소 감축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본 제정안에 별도의 우선구매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공공기관 등에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³¹⁾ 및 각 기관의 예산 범위 제한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³²⁾와 같이 구매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품목 부재·공급 불안정·품질 저하·예산상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 사유를 단서로 명시하여 의무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 ②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³³⁾와 같이 우선구매를 ‘재량적 요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그것임.

3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3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우선구매제도 관련 입법례 비교]

법률	규정방식	비고
「녹색제품구매법」	의무 (구매하여야 한다)	예외사유 명시 (품목부재, 공급불안정, 품질 저하, 타법 우선구매, 긴급수요 등)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재량 (요청할 수 있다)	X
제정안	의무 (구매하여야 한다)	X

탄소중립제품·저탄소제품은 아직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있어 공공 조달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이라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우선구매 의무 자체를 재량으로 완화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의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구매법」과 같은 수준의 예외사유를 명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셋째, 구매자·이용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탄소중립 제품등 및 저탄소제품 구매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의 신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³⁴⁾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세제감면 사항을 정하면 이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 및 “조특법”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비추어 본 제정안의 조세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실질적인 조세감면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의 신설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조세감면 유사입법례]

「탄소중립기본법」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34) 「조세특례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사. 허가등 신속처리,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등(안 제12조~제15조 및 제21조·제22조)

제정안은 탄소중립전문기업·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대하여 ① 신속처리 특례(제12조·제21조), ② 중점산업에 대한 인증의 우선처리 및 배출기업의 사업재편·사업전환 우선 처리 등 우선 적용 특례(제13조·제22조), ③ 중점산업 분야 R&D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우선 선정·면제(제14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제15조)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15조, 제21조·제22조]

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탄소중립전문기업은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한 탄소중립전문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업”이라 한다)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중점산업과 그 산업에서 활용하는 탄소중립기술, 탄소중립전문기업, 탄소중립제품등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처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중립제품등 생산·제공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수입 위험 완화 및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산업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탄소중립전문기업이 소재하는 지역 등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산업 특화 녹색융합클러스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 연료공급시설의 도입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도입
5.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 특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등을

제 정 안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중점산업 분야의 탄소중립기술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환경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14조(사업추진심사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산업 분야의 탄소중립기술 개발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기술 개발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법 제7조제1항의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 달성, 국가 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또는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심사를 면제한다. 이 경우 사업추진심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중점산업 분야의 탄소중립기술 개발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달성, 국가 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또는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와

제 정 안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점산업 분야 탄소중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지연되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허가권자에게 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에서 활용하는 탄소중립기술, 저탄소제품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

제 정 안

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처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탄소중립산업으로 사업을 융합·재편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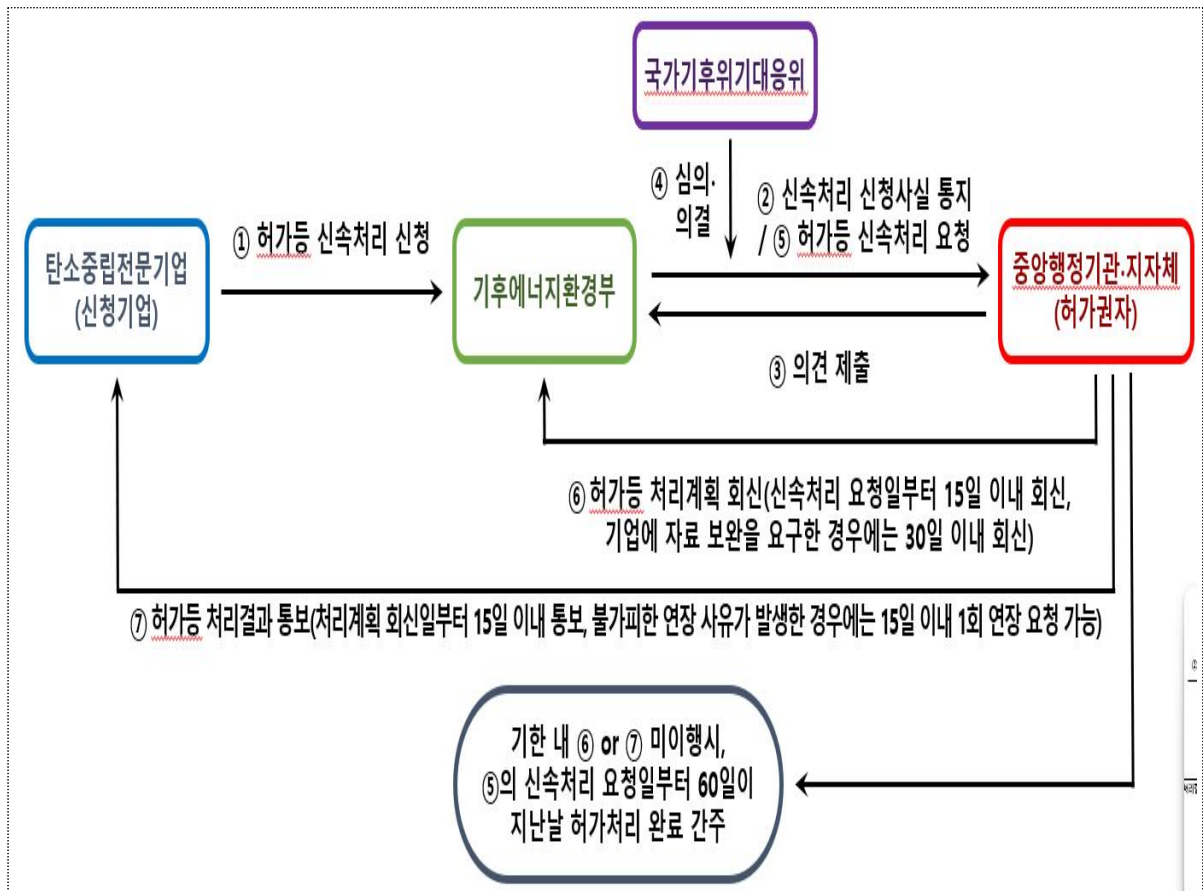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기업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탄소중립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전환을 요청하거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의2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처리하여야 한다.

(1) 신속처리 특례(제12조·제21조)

제정안은 전문기업·배출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활동 중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기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신속처리를 신청할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를 요청하고 일정 기한 내 허가권자의 회신이 없으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신속처리 절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사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의 탈탄소전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동 제정안의 형식과 유사하게 신속처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신속처리 특례 유사입법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동일하게 허가권자가 기한 내에 처리 계획을 회신하지 않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날에 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인허가·규제 등은 공공 안전·질서 유지 및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로, 관련 신속처리 등 절차도 제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³⁵⁾을 제시하였음.

한편, 국무조정실은 제12조·제21조의 인·허가 신속처리, 제14조의 R&D 사업추진심사, 제15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심의·의결에 국가기후 위기대응위원회를 협의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규정에 대하여, 심의사업 등은 각 부처 소관사항으로 총리 주재 위원회에서 바로 논의하는 것은 의사결정 위계상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행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개별 안건은 부처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중점산업에 대한 인증의 우선처리 등 특례(제13조·제22조)

제정안은 중점산업 및 배출기업의 탄소중립 융합·전환을 위해 국가 표준인증,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전망 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탄소중립정책의 집중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5) 제정안의 인허가 간주,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의결을 통한 규제특례 부여 등은 기존 인허가·규제특례 체계와 상충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 문제를 초래할 우려(산업통상부)

[다른 법률의 우선적용 특례(제13조·제22조) 비교]

	제13조(중점산업·탄소중립전문기업)	제22조(온실가스 배출기업)
표준화 및 인증	[정부 공통] 중점산업 기술·제품 등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상 표준화, 적합성평가, 인증 우선 처리 (의무)	[정부 공통] 배출기업의 활용 기술·제품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상 표준화, 적합성평가, 인증 우선 처리 (의무)
산업지원 및 사업재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부·장 필수 소재의 「소부장특별법」상 통계 작성,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국내 생산시설 구축 등 우선 지원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배출기업의 탄소중립산업 사업 융합·재편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및 「기업활력법」상 심의 우선 처리 (의무)
클러스터 및 사업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문기업 소재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법」상 클러스터 우선 지정 및 재생·수소에너지 설비 도입 등 지원 (재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 배출기업의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 등 우선 지원·처리 (의무)
R&D 우선 추진	[정부 공통]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기술개발사업 등 추진 시 중점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 (의무)	-

이와 같은 우선처리 규정은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다른 정책 목표보다 우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산업통상부는 표준화·적합성평가·인증, 공급망 안정화조치, 사업전환, 기술개발 등은 탄소중립 외에도 산업·수출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 상황, 고용유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탄소중립만을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36)에서 환경보호·신사업분야 등으로 사업전환 시 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둔 것과 동일하게 동 조항도 재량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37)

(3) 사업추진심사 우선 선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제14조·제15조)

사업추진의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임.

「과학기술기본법」 38)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생략)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 ② (생략)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생략)

37) 이에 대하여 기후부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규정은 일반적인 환경·신산업 전환 관련 사항이나, 이 중 탈탄소 전환에 단기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본 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 규정이 바람직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3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³⁹⁾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재난 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간은 통상 9개월이 소요되는데,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는 경우 등에는 수행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⁴⁰⁾될 수 있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탄소중립 R&D 및 시급한 특화단지 인프라조성 사업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핵심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심사를 면제하고 예타 면제 신청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⁴¹⁾에서 발전지구 내 시급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4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훈령)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4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자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기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 15조는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 기관장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기업·준정부 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관장하는 기관은 “재정경제부”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대상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⁴²⁾

한편 재정경제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취지상 특정 분야 사업에만 면제신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개별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제정안 제15조 삭제 의견임.

42)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 ①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별표 3> “주무기관 의견서” 및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5월말 또는 9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1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 탄소차액계약의 체결 등(안 제23조·제24조)

제정안은 배출권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비용과 배출권 거래가격의 차액을 지급·납부받는 탄소차액계약을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지출 연한 : 5년, 예외 10년)에도 불구하고 15년 이내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23조·제24조]

제 정 안
제23조(탄소차액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조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가격(이하 “배출권 거래가격”이라 한다)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납부받는 계약(이하 “탄소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탄소차액계약의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계약별로 1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차액계약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별로 해당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그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하 “단위감축비용”이라 한다)과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을 기준으로 환산한 배출권 거래가격(이하 “단위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서로 비교하여 단위감축비용이 단위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계약체결기업”이라 한다)에 그 차액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단위거래가격이 단위감축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체결기업이 정부에 그 차액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만, 계약체결기업이 제2조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운영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차액계약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차액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거나 납부받는 금액의 총액 또는 연도별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차액계약의 운영에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

제 정 안

대응기금(이하 “기후대응기금”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다만, 기금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차액계약의 대상·방법·절차, 지급·납부 금액의 산정 기준 및 지급·납부 기한·방법, 회계처리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탄소차액계약의 변경 및 해지·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탄소차액계약의 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기업과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 등의 법령이나 중장기감축목표 등 관련 제도·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탄소차액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계약체결기업 모두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체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차액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탄소차액계약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나 그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탄소차액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지급·납부 금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탄소차액계약을 통하여 산정된 납부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차액계약에서 정한 중요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탄소차액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에 준하여 계약체결기업의 의견을 청

제 정 안

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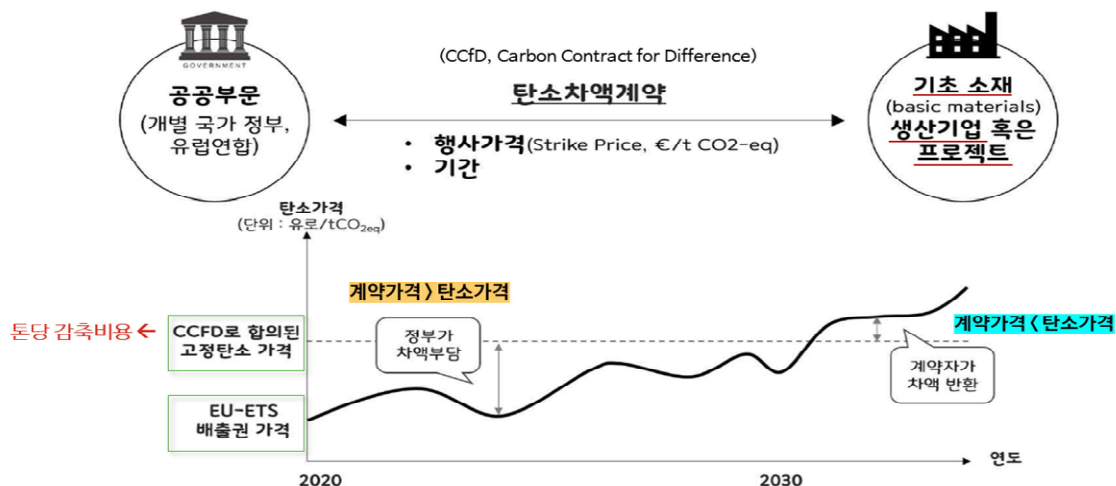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탄소차액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계약체결기업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계약체결기업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차액계약의 변경·해지·해제와 금액의 반환·공제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기업에게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⁴³⁾로, 행사가격이 시장 탄소배출권가격보다 높으면 기업이 차액을 받고, 반대의 경우 기업이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탄소차액계약제도 개념도]



자료 : 에너지집약 산업의 탄소중립과 탄소차액계약(2022, 김지연, 오형나)

43) 기업은 변동하는 배출권 가격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 행사가격을 보장받으므로 투자 위험이 완화되고, 높은 가격으로 저탄소 혁신 기술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참고로,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고정가격을 보장해주는 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 for Difference)는 전력시장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으며, CCfD는 CfD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 주요국 탄소차액계약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

이러한 제도는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현행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충분히 유도되지 않는 고비용 혁신 감축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네덜란드 등 EU의 운영 사례와 맥락을 같이 함.

참고로, CCfD는 최근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⁴⁴⁾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시행 중임.

[글로벌 CCfD 추진 동향]

- EU·독일·네덜란드 등도 배출권거래제와 병행하여 경쟁입찰 기반의 CCfD를 도입, 저탄소 혁신기술 상용화와 대규모 산업 감축을 지원 중
 - 해외에서도 이미 CCfD를 산업 탈탄소 핵심수단으로 활용 중이며, 독일은 40억유로 규모로 기후보호계약(KSV) 도입('23.~)
 - * 독일 KSV(Klimaschutzverträge, 기후보호협약)는 산업공정 전환을 대상으로 15년 계약, 경쟁입찰 배출권·에너지가격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며, '24년 1차 입찰에서 15개 기업 대상 28억 유로 규모 계약 체결
 - * EU 집행위는 CCfD가 ETS(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도)대상 산업 탈탄소 투자에 필요하고, 이러한 공공지원 없이는 기업들이 같은 수준의 감축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24.2.16. 보도자료)

44) EU는 배출권거래제가 배출권 가격의 수준이 낮고 변동성이 커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난감축 업종의 저탄소 기술투자 유인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축 잠재량은 크지만 높은 투자 및 운영비용이 필요한 기술 및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높고 안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CCf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 주요국 탄소차액계약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CCfD 도입 현황]

	네덜란드 SDE++('20년~)	독일 KSV('23년~)
대상	- 재생에너지, CCUS 등(기술 특정) ※ 발전설비 운영자만 지급 대상	산업공정 전환(기술 미특정)
조건	각 기술별 상세 조건 공개	- 감축 목표 * 3년차 60%, 15년차 90% 감축
입찰	- 경쟁입찰 * '21년 약 4,100건(태양광 3,915건)	- 경쟁입찰 * '24년 15개 기업 계약完
평가 (경매)	비용효율성(온실가스 톤당 저감비용)	비용효율성, 감축효과
계약기간	12년 또는 15년	15년
보조금	- CCUS : (고정가격 - 수익*) × 포집량 - 에너지 : (고정가격 - 수익*) × 생산량 * 배출권·에너지 판매수익 등 보정	(고정가격 + 가격보장* - 배출권 가격) × 감축량 - 타지원금 * 에너지가격 등 변동요소 반영
예산액	'22년 130억 유로(17조원)	'24년 1차 입찰 28억 유로 (4.2조원)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제정안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① 15년 이내로 설정한 계약기간, ②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23조제1항은 「국가재정법」 제23조⁴⁵⁾(계속비 지출 연한 5년, 예외 10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45)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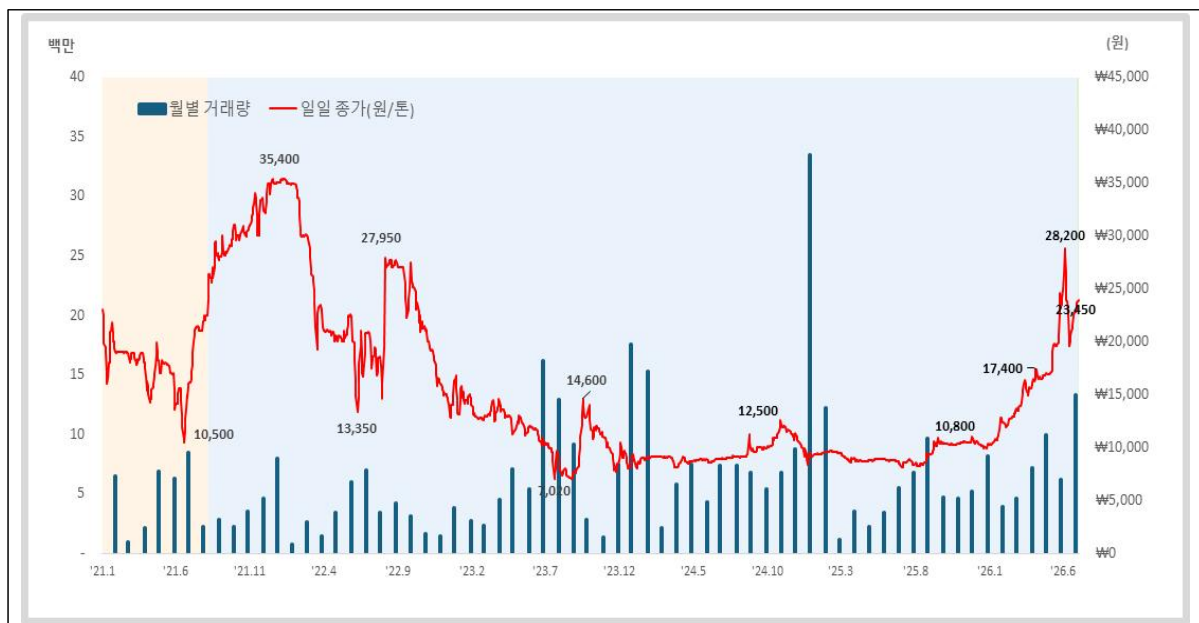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 탄소중립 기술은 설비 구축·투입 자본 회수까지 장기적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민간의 선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계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5년의 기간 설정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1년, 2022년 톤당 약 20,000원 대로 거래되다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10,000원 이하로 거래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 18,000원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탄소차액계약 시점에 따라 민간기업 및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줌.

[최근 5개년 탄소배출권 가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6월
연평균 가격 (원/톤)	19,709	20,633	9,987	9,245	9,170	18,138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이 다시 상승하였으나, 2025년과 같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국가 재정 부담 우려가 있음.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⁴⁶⁾에 따르면, 신기술의 자본 및 운영비용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10~15년의 장기적인 계약기간이 바람직하나, 도입 초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할 경우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시범단계에서는 단기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언이 있었음.

둘째, 제정안은 탄소차액계약의 주된 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상정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다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들 기금과 특별회계는 각각 전기사업 지원, 에너지 안보, 환경오염 개선이라는 고유의 입법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탄소차액계약제도에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탄소차액계약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그 지출 용도는 같은 법⁴⁷⁾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되는데, 그 중 제70조제2호에 따른 '산업·노

46)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 주요국 탄소차액계약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

4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목적과 연계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탄소차액계약 제도는 보조금·이자차액보전 등 기존의 확정적 지급방식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지출방식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15년 장기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근거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또는 하위법령에 기금을 해당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획예산처는 제정안 제23조 및 제24조의 탄소차액계약제도 조항에 대하여 특정 제도·사업을 개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정부 내 논의 중인 제도⁴⁸⁾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삭제 의견임.⁴⁹⁾

산업통상부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탄소중립기술·산업의 부문별로 계약주체를 달리 설정하는 체계가 바람직하고, 각 기금 또는 특별회계

-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48)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 내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해외사례 등 필요성·타당성을 논의 중인 기획예산처의 의견
- 49) < 참고 : 제도 도입 관련 검토 필요 사항 (기획예산처 의견) >

는 그 설치·운용 목적에 따라 활용되어야 하는바, 탄소차액계약에 여타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
계의 본 설치·운용 목적의 달성이 곤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 ▶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배출권 시장이 탄소차액계약 제도 도입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有
(불확실성이 큰 ETS 시장보다 탄소차액계약 제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 큼)
 - ▶ 탄소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재정 소요 불확실성 수반
 - ▶ 탄소 감축량 검증 등 행정비용 증가
 - ▶ 장기 고정계약 체결 시 정책환경 변화 대응력 저하 우려

자. 탄소중립산업 실태조사·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 보호(안 제25조~제28조)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제25조),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제26조), 정보센터 설치·운영(제27조), 산업 보호조치(제28
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5조~제28조]

제정안
제4장 탄소중립산업 등의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25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탄소중립기술과 그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보유한 자, 탄소중립산업과 그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탄소중립제품등의 국내외 시장 현황 등(이하 “탄소중립산업정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실태조사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이하 “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정보관리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공개 대상자의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

제 정 안
립산업정보를 관리·제공하는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이하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을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탄소중립산업정보의 관리·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탄소중립산업의 보호 등)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탄소중립제품등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정보관리체계 구축

탄소중립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시장 현황에 대한 국가 차원이 정확한 통계·정보 기반이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공식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제정안 제25조부터 제27조는 탄소중립기술·산업·제품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 및 정보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정책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적절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기술산업법」 제9조의2, 「기후기술법」 제7조, 「친환경산업법」 제3조의2·제17조 등 기존 법률에 이미 유사한 실태조사·정보망 운영 근거가 있어 조사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관련 실태조사·정보망 운영 현황]

법률	조문	실태조사 대상	정보망 운영
환경기술 산업법	제9조의2 ⁵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X
기후 기술법	제7조 ⁵¹⁾	기후기술개발 활동조사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성별·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친환경 산업법	제3조의2 ⁵²⁾ 제17조 ⁵³⁾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산업환경정보망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자료 : 직접 작성

- 5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성별·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부는 본 제정안의 실태조사가 탄소중립기술·산업·제품 전반에 대한 조사로써 기존 조사와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정안 제27조는 탄소중립산업정보를 관리·제공하는 탄소중립산업 정보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제27조의 정보센터 ‘설치’는 신규 조직 설치로 해석될 경우 정부조직법령상 직제 근거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를 고려할 때,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2) 산업 보호

제정안 제28조는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관세 제도 개선 등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5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친환경 요건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동 규정은 국내 유망 탄소중립 산업의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⁵⁴⁾은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재정경제부는 수출입통관 등 관세제도는 「관세법」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개별법을 통한 특정 산업의 관세 제도 개선은 통관 기준의 파편화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 제28조에 대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차. 탄소중립기술 사업화 지원 및 규제 개선(안 제29조~제31조)

제정안은 탄소중립기술의 연구개발·거래·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제29조), 전문기업·배출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처리 절차를 규정하며(제30조), 규제개선 관리·감독의 근거를 규정함(제31조).

[제정안 제29조~제31조]

제정안
제29조(탄소중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기술 관련 연구개발·실증 사업 2.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탄소중립기술의 거래·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3. 탄소중립기술의 거래·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4. 탄소중립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5. 탄소중립기술 및 그 기술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흡수량 등의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6. 탄소중립기술의 사업화 관련 성과관리 및 활용 7. 그 밖에 탄소중립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탄소중립전문기업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그 기업의 탄소중립기술 또는 탈탄소 전환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화,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제공 활동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제 정 안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31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30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탄소중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정안 제29조는 탄소중립기술의 R&D부터 실증, 거래·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기법 보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업이 초기 사업화 자금 부족이나 이전·중개 인프라 미비로 인해 탄소중립기술 상용화에 실패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탄소중립 신기술은 자금의 문제로 최종 상용화까지의 성공률이 낮아 민간 자본만으로 확산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부가 기술 거래 중개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인프라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해양수산부는 탄소중립기술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사

업화 지원 시 기술 분야별 소관 부처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임.

한편, 현재 산업통상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⁵⁵⁾에 따라 기술거래소 및 가치 평가 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⁵⁶⁾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독자적인 탄소중립기술 거래·이전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할 경우, 기존의 범부처 기술사업화 플랫폼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탄소중립기술·탈탄소전환 규제 개선

제정안 제30조 및 제31조는 탄소중립전문기업과 배출기업이 탈탄소 전환시에 존재하는 규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직접 개선을 요청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경우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생태계를 견인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

5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울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57) 등에서도 핵심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처 협의형 규제개선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임.

5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체계로서 출범되어 운영 중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탄소중립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 별도로 심의·의결할 경우 두 위원회 간 역할 상충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이에 더하여, 산업통상부는 각 산업별로 필요한 규제특례는 개별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 요건 등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 부여에 대한 적절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조건을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본 제정안이 기존 부처별 규제 권한 및 책임 체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카.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협업체 구축 등(안 제32조~제35조)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근거(제32조),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를 위한 대학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제33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지원 근거(제34조)를 신설하고, 탄소중립산업 육성·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업체 운영 근거(제35조)를 마련함.

[제정안 제32조~제35조]

제정안
제3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산업 및 탈탄소 전환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사업 2.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3. 탄소중립산업 및 탈탄소 전환 분야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4.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기술인력의 재교육 사업 6.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 및 탈탄소 전환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취업지원 및 창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등)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 및 탈탄소 전환 분야의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

제 정 안

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 및 탈탄소 전환 분야의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기반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탄소중립산업 및 탈탄소 전환 분야의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지원 등)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과 탈탄소 전환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산업 및 탈탄소 전환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탄소중립전문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산업 및 탈탄소 전환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그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내 탄소중립 신산업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임.

탄소중립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운용할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은 탈탄소 산업의 인력 mismatch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술·인력의 국제 교류 지원을 지원할 경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급격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동 제정안과 유사하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문인력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전문인력양성, 우수인력 발굴·유치 등 유사입법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 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된 ‘계약학과’라는 용어는 고등학교 분야 인력양성의 근거 법령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식 법정 용어⁵⁸⁾ 및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5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다는 교육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므로, 타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행정안전부는 제정안 제35조에 따른 민·관 협의체는 국무총리 소속의 최상위 법정 기구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

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소관 내에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 등 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므로, 총괄 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정 협의체를 구성·운영 하도록 의무화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분과 구성 및 역할]

분과명	역할·기능
온실가스 감축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경로 설정 · 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분야 탄소중립 정책·계획
에너지·산업 전환	· 에너지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믹스 및 산업분야 탄소중립 정책·계획 심의
공정전환·기후적응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지원, 이력양성 및 교육 · 기후위기 적응대책 · 취약분야·계층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정책·계획
녹색성장·국제협력	·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기술·금융 활성화 ·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계획

자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위원회 소개 - 분과구성 및 역할

(<https://www.pcccr.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1&menuLevel=2&menuNo=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략)

참고로,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산업 육성·전환 분야에 한정해 기업 등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구로 성격을 명확히 한다면, 일본 GX추진법의 민관 협의체(GX리그⁵⁹⁾) 사례에 비추어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59) 기업, 정부, 학계가 연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함과 동시에 산업적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에 설립된 포럼으로, 2025회계연도에 종료되어 “GX 미래 컨소시엄”으로 전환되었음.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7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타. 재원 조성 및 추진상황 점검 등(안 제36조~제39조)

제정안은 기금·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및 국채 발행 근거(제36조), 벤처투자모태조합(제37조)·투자전문조합등(제38조)을 활용한 투자 지원, 추진상황·성과 점검 및 결과 공개(제39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36조~제39조]

제정안
제5장 재원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제36조(기금 및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하여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기후대응기금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해 그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7조(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벤처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제 정 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 수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투자전문조합등을 활용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이하 “투자전문조합등”이라 한다)를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전문조합등을 활용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사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량적·정성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교육청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견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개선의견 제시 및 정책 반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공정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을 ①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및 국채 발행, ②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 ③ 투자전문조합등을 활용한 지원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국채 발행

제정안 제36조제2항의 국채 발행 근거 신설은 일반 회계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⁶⁰⁾ 초창기·대규모 탄소중립 사업에 재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임.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기후변화 대응 등 기후 위기·환경보전 사업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4,849억달러(약 720.6조원)의 녹색채권이 발행⁶¹⁾되었으며, 발행기관은 정부, 금융기관, 에너지회사 등으로 다양함.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녹색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국채 단위 녹색채권 발행은 아직 저조한 상황임.

민간채권의 경우 2018년부터 ‘녹색채권’ 명의로 발행되어 왔으며, 특히 ‘한국형 녹색채권’은 ① 발행 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정한 6대 환경목표⁶²⁾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② 외부검토 및 사후보고 등 엄격한 자금 관리·검증 절차

60) 현행법상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 재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배출권 거래제의 수입 저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도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대폭 감소

61) 「해외 녹색채권 발행통계 분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12.

62)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가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

차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구분됨.

한국형 녹색채권은 2018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43조 6,098억원 규모로 발행⁶³⁾되었으며, 정부는 민간의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⁶⁴⁾을 수행하고 있음([참고 6] 참조).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전환을 위한 목적의 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가 이차보전 지원 사업 주체에서 벗어나 직접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녹색분야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대내외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제정안은 「국채법」 준용 조항이나 하위 법령 위임 규정이 부재하여 국채 발행 과정에서 채권의 종류·이율, 발행 절차 등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문 정비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최근 본회의(2026.8.26.)에서 가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20801)에는 ‘녹색국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필요가 있음.

63) 출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녹색채권 발행현황

64)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사업(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 개요]

- (목적)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사업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이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 발행금액의 0.2%(대기업·공공기관 등) 또는 1.0%(중소·중견기업)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

- (2026년 예산) 8,100백만원

[녹색국채 발행 규정 조문 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801)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이하 “녹색국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녹색국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녹색국채는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행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녹색국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⑤ 녹색국채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벤처투자모태조합·투자전문조합 활용

제정안 제3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⁶⁵⁾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6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

(모태펀드)을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기 단계의 탄소중립 기술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아 일반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투자조합 활용의 근거를 규정하는 동 조항은 탈탄소 신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앙정부·기금관리주체·지자체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지원 근거 규정 이미 존재하고, 모태펀드 출자 주체를 타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유사입법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 권한을 규정하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유사입법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 보칙 및 부칙(안 제40조~제43조, 부칙 제1조~제3조)

제정안 보칙은 자료 제출·검사(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제41조), 적극 행정 면책(제4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3조)를 규정하고 있음.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로 규정하되, 그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보칙 및 부칙]

제 정 안
제6장 보칙
제40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기업 중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특례 등을 적용받는 기업
2. 제5조제1항에 따라 확인된 탄소중립전문기업 중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특례 등을 적용받는 기업
3.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전문기업의 탄소중립제품등 생산·제공 등이나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감축등 또는 저탄소제품 생산·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관한 금융상품을 개발·운용하는 금융회사등
4.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5.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탄소중립제품등 또는 저탄소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
6. 제23조제1항에 따라 탄소차액계약을 체결한 계약체결기업
7. 제24조제2항에 따라 탄소차액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거나 그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받는 기업
8. 제27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탄소중립산업정보센터

제 정 안

9.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자
10.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행 기관 또는 단체
12. 제37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과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받은 자
13. 제38조제1항에 따른 투자전문조합등과 투자전문조합등을 활용한 지원을 받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입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보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공무원이 제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정 안

제43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에 제39조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칙

제정안 제6장(보칙)은 법안의 실효적 집행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를 받는 기업·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권한을 규정하고(안 제40조), 업무 일부의 위탁 근거 및 수탁 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하며(안 제41조 및 제43조), 신산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를 명시함(안 제42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확인·검사 권한의 중복 문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음.

안 제40조제1항제12호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조

합 등에 대한 확인·검사·보고 권한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 기관의 고유 권한임을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⁶⁶⁾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문기업 등의 인증 지정 취소 처분 시 피처분자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6호⁶⁷⁾는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 취소시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 지정 취소 외의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벌칙(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66) 민간 벤처투자회사·조합에 대한 보고·검사권 등은 제도 운영을 위한 법체계 측면과 중복규제 등을 고려하여 벤처투자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 법률에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6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부칙

제정안 부칙은 법 제정의 시급성과 하위법령 마련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제1조),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본 제정안의 목적을 반영하여 204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조), 향후 성과 점검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회에 보고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특례를 규정함(제3조).

부칙 제5조는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 제도’라는 새로운 국가 인증·확인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타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녹색기업 제도 등에 대하여 동 제정안의 전문기업으로 의제하거나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부재함.

초기 제도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법적 혼선과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이전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

참고 1

미국 IRA에 규정*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내용**

분류	세액공제 대상	주요 내용
생산세액공제 (PTC)	재생에너지 전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태양광,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공제(1kWh 당 0.3센트)
	적격 원자력	-적격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공제(1kWh 당 0.3센트)
	청정전력	-재생에너지 또는 적격 원자력에 해당하지 않는 탄소 무배출 전기에 대한 공제(1kWh 당 0.3센트)
	탄소포집	-포집 및 격리된 이산화탄소 톤당 17달러 또는 석유 회수증진을 위해 주입·활용된 이산화탄소 톤당 12달러 공제
	청정수소	-생산된 청정수소 1kg 당 60센트 공제
	첨단 제조	-풍력 부품, 태양광 부품, 인버터,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제조에 대한 공제
투자세액공제 (ITC)	에너지	-태양광, 풍력 장비, 연료전지, 복합열전기, 폐기물,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적격 투자프로젝트 대상
	적격 선진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부의 심사를 거친 연료전지, 마이크로 터빈, 전력망 현대화 부품, CCS 등 선진 기술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대상
	청정전력	-2024.12.31. 이후에 가동된 무배출 발전설비 및 ESS 설비투자 대상
에너지효율 관련 세액공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개선	-비상업용 개인 주택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제품의 구매 및 설치에 대한 세액 공제
	주택용 청정에너지	-ESS 등 주거용 청정 에너지 장비 구입에 대한 세액 공제
	신축 에너지효율 주택	-신축 에너지효율 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
	에너지 고효율 상업용 건물	-에너지 고효율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액 공제

* IRA를 통해 미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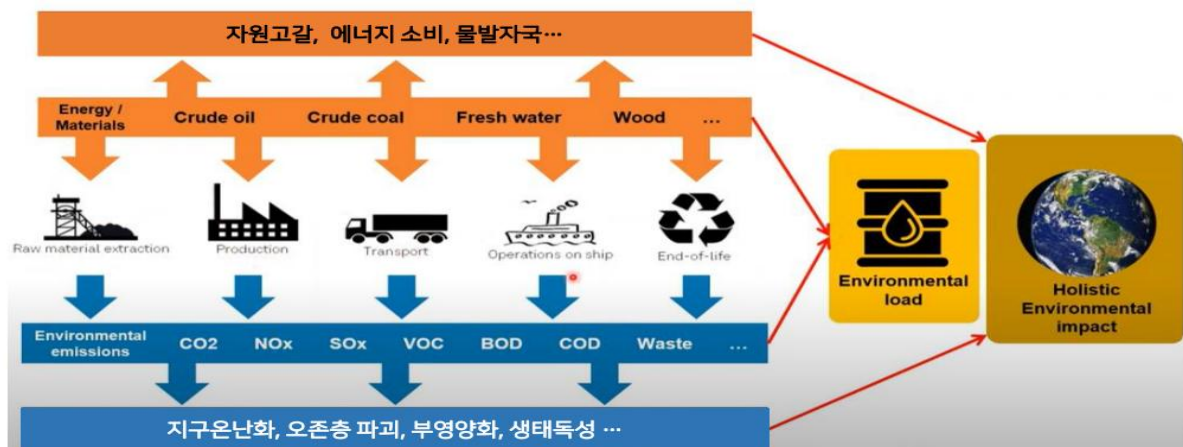
** 산업통상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함.

참고 2

전과정평가(LCA) 개요

□ 전과정평가(LCA) 란?

- 제품·물질 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료의 채취부터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까지의 전과정(life cycle)을 고려하는 개념
 - 전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과 발생되는 오염물질(환경부하)의 양을 정량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법



[그림 5] 전과정평가 개념도

- 따라서, 제품·물질의 전과정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료 채취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환경부하(env.loads)를 목록화한 LCI DB가 필요



[그림 6] 전기 LCI DB 산정 구조(예시)

□ 전과정평가(LCA) 수행 기준 문서

- LCA는 평가기준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수행기준을 적용하여 진행
 - 전과정평가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인 ISO 14040(원칙 및 기본구조) 및 ISO 14044(요구사항 및 지침)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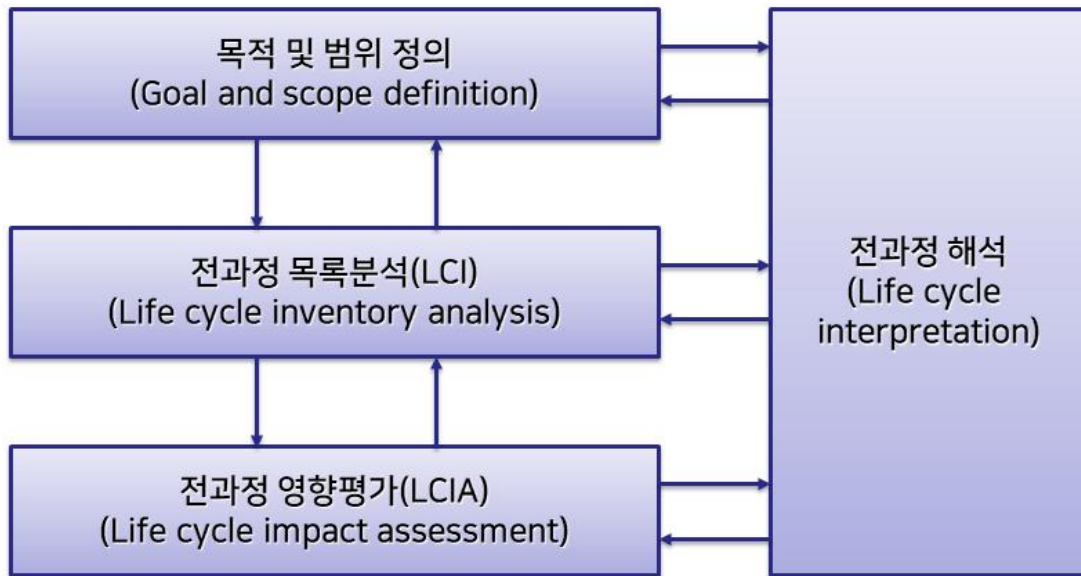


- LCA 기반 규제의 경우, 규제 목적, 대상, 규제 내용 등을 고려한 개별 기준을 적용하거나, 산업별 제품 특성을 반영한 LCA 수행 기준 별도 정의



□ 전과정평가(LCA) 기본구조

- 전과정평가 관련 국제표준인 ISO 14040 및 ISO 14044에 따른 기본구조와 평가방법에 따라 전과정평가를 수행



[그림 9] 전과정평가 기본구조

- **(목적 및 범위 정의)** 전과정평가 연구결과의 이용분야를 고려하여 연구목적 설정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
- **(전과정 목록분석)** 제품·물질시스템의 전과정에 관련된 투입물과 산출물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단계(LCI DB)
- **(전과정 영향평가)** 전과정 목록분석 결과를 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하여 중요한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단계
 - 자원과 인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단계로 분류화, 특성화, 정규화, 가중화 단계로 구성
- **(전과정 해석)** 전과정 목록분석과 전과정 영향평가로부터 얻은 결과를 목적 및 범위에 맞게 해석하는 단계

참고 3

녹색제품 개요

□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탄소중립기본법 제66조에 따라, ①에너지, ②자원의 투입과 ③ 온실가스, ④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혜택) 녹색제품구매법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 (범위)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구 분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표 시			
개 념	같은 용도의 타 제품 대비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탄소배출 감소,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오염물질 감소 등	같은 용도의 타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을 줄인 제품 * 제품 전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비교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주로 KS 제품표준 준용 (압축강도, 열전도율 등 다양)
대 상	사무기기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160개	모든 제품(야구용 농수축산물 임산물 제외(타법 관리))	폐플라스틱, 폐지, 폐목재 등 287개
특 징	①~④ 모두 고려 (제품별 상이)	③ 고려	① ② 고려
의 의	종합적 환경성 개선	산업계 탈탄소전환 지원	순환경제 촉진
인증 근거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제1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저탄소제품기준)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제2호 ▶산업통상부 고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인증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 제도 개요

-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체계 구축 기여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 **(환경성적표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 제조, 수송, 사용, 폐기)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로 계량화하여 제품에 표시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절차)**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심의의결을 통한 인증 부여
※ (인증절차) 신청 → 서류현장심사 → 심의 → 결과통보 → 사용계획서 승인 → 인증서 교부
- **(인증대상)** 생산재, 비내구재, 내구재, 서비스
※ 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
- **(작성지침)** 총 70개('25.7월 고시 개정 기준)
※ 공통지침(3개), 개별지침(46개), 에너지 사용제품 사용 시나리오(21개)
- **(인증혜택)** (공공구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저탄소제품 포함, (조달)제한·지명경쟁입찰 대상 저탄소제품 포함, (생활소비)그린카드·탄소포인트 제도 연계 인센티브 제공

참고 5

저탄소제품인증 개요 및 현황

□ 개요 및 현황

- **(근거)**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제1의2호, 저탄소제품 기준(기후부고시)
- **(목적)**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
- **(현황)** '22년 492개 → '23년 872개 → '24년 1,101개
|→ '25년 1,527개 → '26.4월 1,669개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2단계)
저탄소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 저탄소제품 인증 기준

* 두 기준 중 하나의 기준 만족 시 인정

- ① **(동종제품 평균이하)**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
- ② **(기준대비 탄소감축)** 해당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의 직전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 이상
* 최소탄소감축률 :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 저탄소제품 인센티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해당

참고 6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 자료(출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1. 한국형 녹색채권 현황

구분	내용
누적 발행기관	총 137개
누적 발행금액	43,609,849백만원
- 상환액	14,999,000백만원
- 상장잔액	28,610,849백만원
누적 발행종목수	487개
- 상환종목수	159개
- 상장종목수	328개
평균표면이자율	3.114%

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 추진배경

-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예산규모) ('26년) 8,100백만원 ※전액 이차보전
- (지원대상) 사업 공모 후 선정된 기업 중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관
 - (선발방식) 최저요건을 갖춘 기업이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으로 신청하면 부문별 선착순(녹색 부문 및 중소·중견기업 우선)
- (지원방식) 참여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 * 최대 3억원까지 이차보전, (대·공기업) 0.2%p / (중소·중견기업) 1.0%p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사업 공고	기술원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대상 사업 공고
↓		
② 참여기업 선정	기술원	선착순을 대원칙으로 녹색/전환부문별 참여기업 선정
↓		
③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경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④ 지원금 지급	기술원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차비용 지원금 지급

□ 추진 성과

- 2023년 25개사가 4조 6,339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2024년 27개사가 5조 1,662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2025년 37개사가 5조 2,697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